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

규정집

2024. 2. 15.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사각형은 언론 수호 투쟁의 선봉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나타내며,
동서남북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미래지향성을 표현합니다.

사각형안의 두 개의 '펜' 형태는 방송과 신문을 나타내며,
전체 형태는 'MEDIA WORKERS' 영문 머리글자 'M'을 형상화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비상'하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

1.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1. 우리는 언론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해 앞장선다.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해 조합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조직민주주의를 실현한다.

1.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

1.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가 모두 하나라는 인식 아래 국제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항구적 세계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목 차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	5
목 차.....	6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	7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정.....	22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22
본부·지부 운영 (모범) 규정.....	24
기금운영 규정.....	32
조합비 규정.....	37
회의 규정.....	40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47
정치위원회 규정.....	49
성평등위원회 규정.....	51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규정.....	53
선거관리 규정.....	54
지도위원·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규정.....	68
처무 규정.....	70
보수 규정.....	86
회계 규정.....	93
상벌 규정.....	101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108
정보통신운영 규정.....	110
민주언론상 규정.....	114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

2000년	11월 24일		제정
2002년	2월 1일	제 1차 정기대의원회	1차 개정
2003년	1월 17일	제 2차 정기대의원회	2차 개정
2004년	2월 19일	제 3차 정기대의원회	3차 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4차 개정
2008년	7월 17일	제10차 임시대의원회	5차 개정
2009년	2월 12일	제11차 정기대의원회	6차 개정
2010년	10월 6일	제14차 임시대의원회	7차 개정
2013년	2월 20일	제19차 정기대의원회	8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9차 개정
2015년	7월 23일	제23차 임시대의원회	10차 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11차 개정
2017년	8월 29일	제27차 임시대의원회	12차 개정
2020년	4월 20일~24일	제30차 온라인 정기대의원회	13차 개정
2021년	1월 26일~27일	제31차 온라인 임시대의원회	14차 개정
2021년	2월 4일~5일	제32차 온라인 정기대의원회	15차 개정
2021년	6월 28일	제33차 온라인 임시대의원회	16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17차 개정
2023년	2월 9일	제36차 정기대의원회	1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을 언론노조(이하 조합)라 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NUM)라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7.9.7. 개정>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언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언론 구현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노동조건 유지와 개선 및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민주언론 실천을 위한 언론개혁, 공정보도 등 제반활동
4.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철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2017.8.29. 신설>
5. 사회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6. 국내외 타 노조,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7.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8. 조합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광고사업, 부동산 임대 및 부대 사업 등 <2021.2.4.~5. 신설>
9.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전국의 언론·출판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016.2.25. 개정〉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가입 및 탈퇴는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부·지부를 통한 가입 및 탈퇴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따른다. 〈2015.7.23. 개정〉 [〈2022.2.23. 개정〉](#)

제9조(본부·지부의 설치)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본부·지부를 두며, 그 대표를 본부장·지부장이라 한다. 본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으로, 지부는 조합원 1000명 미만으로 구성한다. 〈2007.9.7. 개정〉 〈2011.2.24. 개정〉 [〈2022.2.23. 개정〉](#)

제10조(본부·지부의 의무) 본부·지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2022.2.23. 개정〉

1. 활동 사항과 수지 결산 보고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년 1회씩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2. 대의원회(총회) 시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3. 조합원 명부를 매 반기 말(1월말, 7월말)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사항에는 조합원의 성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2016.2.25. 개정〉
4. 조합이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 본부·지부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2007.9.7. 신설〉 [〈2022.2.23. 개정〉](#)

제11조(본부·지부 운영규정) ① 조합은 규약 범위 내에서 본부·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022.2.23. 개정〉

②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본부·지부 대의원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원장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3.4.16. 개정〉 [〈2022.2.23. 개정〉](#)

③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언론노조의 규약과 규정은 본부·지부 운영규정에 우선한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제12조(본부·지부 임원 선출 및 임기) 〈2022.2.23. 개정〉 ① 본부·지부 임원의 선출은 조직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본부·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 ① 조합은 교육, 선전, 대외협력, 일상 활동 등 현장의 조직 활동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체별 또는 지역별·직종별 등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013.4.16. 개정>
- ② 각 협의회의 예산 운용은 [각종협의회 예산운용 규칙](#)에 따른다. <2022.2.23. 개정>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
7.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5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단체)간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권익 수호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 제16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제5조](#), [6조](#)에 의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2016.2.25. 개정>
- ② 이를 위해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2007.9.7. 개정><2013.4.16. 개정>

제17조(조합비의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세전 임금 총액의 1.1%를 조합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2010.10.6. 개정> (2011.1.1. 시행) <2016.2.25. 개정>

- ② 조합은 조합비 총액 1.1% 중 총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를 본부·지부에 배분한다. 단, 개별 가입 조합원은 그렇지 않다. <2009.2.12. 개정> <2010.10.6. 개정>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 ③ 조합은 조합비 총액 1.1%중 총액 0.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부·지부에서 언론노조 중앙사무처에 파견한 전임자의 임금에 사용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언론노조 상임 지도위원, 전문위원의 임금으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0.10.6. 신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④ 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본부·지부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007.9.7. 개정> <2013.4.16. 개정> <2022.2.23. 개정>

⑤ 조합은 필요 시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2007.9.7. 신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8조(기관)

① 조합은 다음의 필수기관과 상설기관을 둔다. <2023.2.9. 개정>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민주언론실천위원회
5. 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6. 성평등위원회 <2017.8.29. 신설>
7. 선거관리위원회
8.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2023.2.9. 신설>

②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또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또는 기구의 대표자와 구성원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설치 목적의 소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해산하며, 해산된 특별위원회 또는 기구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① 조합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조합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 결의로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2(온라인회의) 조합의 회의는 기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송수신되는 영상, 음성, 문자,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이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회의규정에서 정하고, 임원 선출에 관한 투표(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2021.1.26.~27. 신설>

제1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의결사항)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016.2.25. 개정>

④ 조합원 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하여 그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021.1.26.~27. 개정>

제21조(소집절차 및 공고) ① 총회는 전조 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2016.2.25. 개정>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6.2.25. 개정>

⑤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2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2007.9.7. 개정> <2016.2.25. 개정>

② 대의원은 본부·지부 조합원 수 100명당 1명을 배정하고, 20명 미만 조직은 매체별 또는 지역별로 합산하여 배정한다. <2007.9.7. 개정>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20~100명 : 1명		101~200명 : 2명		201~300명 : 3명 ...
--------------	--	---------------	--	-------------------

- ③ 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산정은 대의원회 직전 12개월간의 평균 조합비에 의한다. 단, 조직 결성 12개월 미만의 지부는 결성 후 평균 조합비에 의한다.
- ④ 대의원회 직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본부·지부 또는 조합원은 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 단 조합비규정 제5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직결성 12개월 미만의 조직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한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2023.2.9. 개정>
- ⑤ 본부·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007.9.7. 개정> <2022.2.23. 개정>

제23조(소집절차 및 공고)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중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2013.4.16. 개정> <2016.2.25. 개정> <2021.1.26.~27. 개정>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 ③ 위원장이 제2항 제2호의 기한 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6.2.25. 개정> <2021.1.26.~27. 개정> <2023.2.9. 개정>
- ④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대의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하여 그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021.1.26.~27. 신설>

제24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16.2.25. 개정>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성평등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016.2.25. 개정> <2021.6.28. 개정>
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4. 결산 승인,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12. 산하조직 징계에 관한 사항 <2016.2.25. 신설>
13. 본부·지부 인준 거부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2022.2.23. 개정>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2007.9.7. 신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규약 제13조에 의해 구성된 지역별 언론노조협의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2007.9.7. 신설> <2008.7.17. 개정> <2016.2.25. 개정>

③ 임명직 위원은 매체와 직종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30% 이상의 여성할당을 시행하며 대의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2008.7.17. 개정> <2013.4.16. 개정> <2017.8.29. 개정> <2020.4.20.~24. 개정>

④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2021.1.26.~27. 개정>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제25조의1(회의) <2016.2.25. 신설> ① 의안은 회의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본부·지부에 속한 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대표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③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으로 상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건 <2013.4.16. 개정>
2.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3. 고문, 지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2016.2.25. 개정>
4. 조합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5. 조합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의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2011.2.24. 개정> <2013.4.16. 개정> <2015.7.23. 개정>

8. 본부·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7.8.29. 통합 개정> <2022.2.23. 개정>

가. 신규로 조직된 본부·지부의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2017.8.29. 신설> <2022.2.23. 개정>

나. 기업별 노조에서 언론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2015.7.23. 신설〉

다. 탈퇴 및 제명된 조직(기업별 노조 포함)에서 언론노조에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2015.7.23. 신설〉

라. 조합원 수 증감에 따른 본부·지부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2011.2.24. 개정〉 〈2013.4.16. 개정〉
〈2015.7.23. 개정〉 [〈2022.2.23. 개정〉](#)

9. 총파업 외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과 본부·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2011.2.24. 개정〉 〈2013.4.16. 개정〉 [〈2022.2.23. 개정〉](#)

10.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11. 조직 분규가 발생한 본부·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2011.2.24. 개정〉
[〈2022.2.23. 개정〉](#)

12. 조합 활동 중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

13. 위원장이 소집하는 본부·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2011.2.24. 개정〉 [〈2022.2.23. 개정〉](#)

14. 단체교섭 위임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5. 규약·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규약·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사항과 처무·보수·회계·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정보통신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2013.4.16. 개정〉](#)[〈2023.2.9. 개정〉](#)

16.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급여 및 직무비에 관한 사항

18. 사무처 실국 개폐에 관한 사항

19. 조합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20.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27조(구성) ① 조합은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를 설치한다.

② 민실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007.9.7. 개정〉〈2013.4.16. 개정〉

③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별도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을 둔다. 〈2007.9.7. 신설〉〈2013.4.16. 개정〉

제28조(활동) 민실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민실위는 편집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2. 민실위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민실위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 민실위는 2001년 11월 24일 발표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이 전 언론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7.9.7. 신설>
5. 민실위는 조합원이 취재활동 과정에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07.9.7. 신설>
6. 민실위는 공정보도를 위해 설립한 대안적 언론활동을 지원한다. <2013.2.20. 신설> <2016.2.25. 개정>

제5절 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 제29조(정치위원회) ①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위원회를 두며,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07.9.7. 신설> <2013.4.16. 개정>
- ②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별도의 정치위원회 규정을 둔다. <2007.9.7. 신설> <2013.4.16. 개정>

제6절 성평등위원회 <2017.8.29. 신설>

- 제30조(성평등위원회) ① 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 위원회를 두며,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017.8.29. 신설> <2021.6.28. 개정>
- ②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별도의 성평등위원회 규정을 둔다. <2017.8.29. 신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13.4.16. 개정>
- ②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2013.4.16. 개정>

제8절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2023.2.9. 개정>

- 제32조(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① 조합은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조직화를 위해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를 두며,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②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9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33조(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지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3.4.16. 개정>
<2016.2.25. 개정>

② 고문, 지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과 대우는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13.4.16. 개정> <2016.2.25. 개정>

제5장 임원

제34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회계감사 4명 <2008.7.17. 개정>

제3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라. 본부·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권을 갖는다. 또한 본부·지부 대의원의 1/3 이상, 본부·지부 조합원 1/3 이상이 해당 본부·지부 대의원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해당 본부·지부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거나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마. 본부·지부장 및 지역별.매체별협의회 의장의 인준. 단, 인준 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에 한하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3.4.16. 개정> <2022.2.23. 개정>

바.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진다. 이 경우 차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4.16. 개정>

사. 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사무처 각 실.국(부)장, 조합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아.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2013.4.16. 개정>

4. 사무처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 마. 사무처 각 실·국장, 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처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 바.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5. 회계감사

- 가. 조합, 본부·지부의 재정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2007.9.7. 신설>
<2022.2.23. 개정>
- 나. 회계감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007.9.7. 개정>
- 다.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요청기관에 보고한다. <2007.9.7. 개정> <2013.4.16. 개정>
- 라. 조합 회계규정에 명시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2007.9.7. 신설>

제3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선거가 경선이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가 2개팀이면 최다득표팀에 대해, 후보가 3개팀 이상이면 1, 2위 득표팀으로 한정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021.1.26.~27. 개정>

③ 부위원장,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2013.4.16.개정> <2016.2.25.개정> <2017.8.29.개정>

④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보선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2013.4.16. 개정>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선출 방식은 중앙집행위원에서 정한다. <2021.1.26.~27. 신설>

제37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 상 조합의 강령, 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탄핵을 발의하며,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 탄핵이 결정되었을 경우 전조 보선절차에 따라 임원을 보선한다.

제6장 사무처

제38조(부서) 사무처에는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실)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실·국에는 실장, 부실장, 국장, 부(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2021.6.28. 개정>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0조(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본부·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 등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제41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본부·지부장 또는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022.2.23. 개정>

제42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3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본부·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2022.2.23. 개정>

1. 조합의 조정신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임받은 본부·지부의 조정신청은 해당 본부·지부의 의결을 거쳐 신청한다. <2022.2.23. 개정>

제44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본부·지부의 쟁의행위는 조합 위원장의 사전 동의 후 해당 본부·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22.2.23. 개정〉](#)

제45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013.4.16. 개정〉](#)

② 본부·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본부·지부 집행위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022.2.23. 개정〉](#)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6조(재정)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조합비는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마다 회사의 협조를 통해 일괄 공제한다.

③ 개인 가입 조합원은 조합에 직접 납부한다.

제47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합은 쟁의 및 조합 활동 피해자 지원, 정치세력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13.4.16. 개정〉](#)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9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 및 민주언론 실천에 공이 있는 조합원이나 본부·지부 또는 외부 인사나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007.9.7. 개정〉](#) [〈2022.2.23. 개정〉](#)

제50조(징계) 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 및 본부·지부는 징계한다. [〈2022.2.23. 개정〉](#)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조합원에 대한 초심 징계 권한은 본부·지부에 있으며 재심 징계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산하조직(본부·지부)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013.4.16. 개정> <2015.7.23. 개정>
[<2022.2.23. 개정>](#)

③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해산 및 청산

제51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013.4.16. 개정>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2013.4.16. 개정>

부 칙

제1조 2007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정기대의원회의일까지로 한다. <2007.9.7. 개정>

제2조 이 규약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07.9.7. 개정>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정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2002년	3월 22일	제 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8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가입절차 및 탈퇴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조합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부·지부를 통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결정은 본부·지부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2022.2.23. 개정>](#)

제3조(가입신청) 소관 본부·지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중앙 사무처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본부·지부로 이관한다. [<2022.2.23. 개정>](#)

제4조(가입신청서 제출) 해당 본부·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중앙 사무처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제5조(보고) 조합원 가입 및 탈퇴자의 명단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조합에 통보한다.

제6조(탈퇴자 재가입) 조합 탈퇴 후 6개월 미만 경과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전 소속 본부·지부 또는 조합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7.9.7. 신설> [<2022.2.23. 개정>](#)

제7조(제명자 재가입) 조합에서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2007.9.7. 신설>

제8조(가입거부) 본부·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제9조(적용예외) 사고지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지부 운영 (모범) 규정

2000년	11월 24일		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1차 개정
2020년	2월 20일~24일	제30차 온라인 정기대의원회	2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이 운영(모범)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언론노동조합 ○○본부(지부)라 한다. [〈2022.2.23. 개정〉](#)

제3조(사무소) 본부(지부)의 사무소는 ○○에 둔다. [〈2022.2.23. 개정〉](#)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본부(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1. 본부(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본부(지부)는 본부(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가. 본부(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 나. 본부(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 다. 본부(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 라. 기타 본부(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본부(지부)는 사업장 단위 또는 매체별, 지역별, 직능별 등의 단위로 구성한다. [〈2022.2.23. 개정〉](#)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본부(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2022.2.23. 개정〉](#)

제8조(의무) 본부(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2022.2.23. 개정〉](#)

1. 본부(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본부(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회의

제9조(회의) 본부(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2022.2.23. 개정〉](#)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위원회
4. 민주언론실천위원회(공정보도실천위원회 등) [〈2016.2.25. 개정〉](#)
5. 기타회의 [〈2016.2.25. 신설〉](#)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본부(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1. 총회는 본부(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본부(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1조(소집공고) 본부(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 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개정](#)

제12조(의결사항) 본부(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2.23. 개정〉](#)

1. 본부(지부)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부(지부)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모든 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16.2.25. 개정〉
8. 본부(지부)의 재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본부(지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2022.2.23. 개정〉](#)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부(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본부(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 가.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 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다. 전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제15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016.2.25. 개정〉](#)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본부(지부) 대의원 선출기준) 본부(지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1. 선출직 본부(지부) 대의원은 본부(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선출한다.
2. 본부(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및 본부(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22.2.23. 개정〉](#)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모든 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16.2.25. 개정〉
8.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0. 본부(지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18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부(지부)장, 본부(지부) 부본부(지부)장, 사무국장, 산하 조직 대표, 각 국(실)장,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2022.2.23. 개정〉](#)

제19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본부(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제20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 6. 쟁의대책 수립
- 7. 제반 본부(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4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21조(구성) [〈2022.2.23. 개정〉](#) ① 본부(지부)는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를 설치한다.

② 민실위 위원장과 위원은 본부(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2조(활동) ① 민실위는 편집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② 민실위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민실위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제5절 성평등위원회 <2020.4.20.~24. 신설>

제23조(구성) [〈2022.2.23. 개정〉](#) ① 본부(지부)는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성평등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본부(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활동) [〈2022.2.23. 개정〉](#) ① 성평등위원회는 사내에서 채용/인사/출산/육아 등 모든 종류의 성차별 요소를 철폐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조직 내 성평등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본부(지부)장은 단협 개정과 사규 개정 요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

③ 성평등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사내 비조합원의 문제도 포괄하며,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배격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6절 회의

제25조(성립과 결의) 본부(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혹은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22.2.23. 개정〉](#)

제26조(특별결의) 본부(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2.2.23. 개정〉](#)

1. 규정의 개정
2. 본부(지부)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본부(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2022.2.23. 개정〉](#)

1. 본부(지부)장 1명
2. 본부(지부) 부분부(지부)장 약간 명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016.2.25. 개정〉](#)
3. 회계감사 1명 이상 [〈2016.2.25. 개정〉](#)

제28조(임무) 본부(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22.2.23. 개정〉](#)

1. 본부(지부)장
 - 가. 본부(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라. 본부(지부)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마. 본부(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바. 본부(지부) 각 국(실)장, 부(차)장의 제청권을 갖는다. 단, 위원장이 이를 본부(지부)장에 위임할 경우 본부(지부)장이 본부(지부) 간부를 임면한다.
 - 사. 본부(지부)장은 당연직 조합의 대의원이 된다. [〈2016.2.25. 개정〉](#)
 - 아. 본부(지부)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본부(지부) 부분부(지부)장
본부(지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지부)장 유고시 본부(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가. 본부(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또는 본부(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본부(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지부)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조합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2016.2.25. 개정〉](#)

제2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1. 본부(지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보선

가. 본부(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나. 이 경우 본부(지부)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다.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한다. <2016.2.25. 개정>

제6장 부서

제31조(부서) 부서는 총무부(국), 조직부(국), 정책부(국/실), 편집부(국/실)을 포함한 10개 이내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준한다.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 본부(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2022.2.23. 개정>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33조(재정) 본부(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2022.2.23. 개정>

제34조(본부(지부) 운영세칙) 본부(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2.2.23. 개정>

제35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2022.2.23. 개정〉](#)

제37조(회계연도) 본부(지부)의 회계연도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2022.2.23. 개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현재 기업별노조 위원장은 본부(지부)장으로
승계되어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 [〈2022.2.23. 개정〉](#)

제3조(시행) 본 규정은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2.23. 개정〉](#)

기금운영 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제정
2008년	7월 17일	제10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2차 개정
2015년	7월 23일	제23차 임시대의원회	3차 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4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회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 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8.7.17. 개정>

1. 조합비,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의 100분의 8.5 <2016.2.25. 개정>
2. 특정목적을 명시한 기탁금의 경우 그 목적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3. 각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해당 기금으로 귀속시킨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기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금을 폐지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3.4.16. 개정> <2016.2.25. 개정>

1. 투쟁기금 : 제2조에서 조성된 기금의 35%를 할당하여 적립한다. <2016.2.25. 개정>
2. 신분보장기금 : 제2조에서 조성된 기금의 60%를 할당하여 적립한다. <2016.2.25. 개정>
3. 정치기금 : 제2조에서 조성된 기금의 5%를 할당하여 적립한다.

제2장 투쟁기금

제4조(기금의 목적) 투쟁기금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쟁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투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조합의 결정 또는 지시에 따른 파업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2. 조합의 결정 또는 지시에 따른 파업으로 발생하는 제 소송비용

3. 기타 조합이 인정하는 활동지원 및 투쟁 사업 비용

제6조(기금의 집행) 투쟁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한다. [〈2022.2.23. 개정〉](#)

1. 기금의 지급규모는 투쟁방침에 따른 본부·지부의 파업규모, 파업형태, 파업기간 및 구체적인 전술 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2. 지급금액이 500만 원 이하 일 때는 상근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투쟁기금을 지급했을 때, 위원장은 이를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4.16. 개정〉](#)
3. 동일 본부·지부 또는 동일 건에 대해 연속하여 투쟁기금을 지급 할 때 합산하여 500만원 초과 지급시 반드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5.7.23. 개정〉](#)

제7조(연대지원)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도 제6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결산) ① 기금을 지급받은 산하조직은 투쟁 종료 15일 이내에 투쟁활동 보고와 함께, 투쟁기금 사용내역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는 투쟁기금 사용내역을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신분보장기금

제9조(기금의 목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 활동 및 투쟁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신분보장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구류, 구금, 벌금, 감봉, 가압류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2. 기타 조합이 인정하는 조합원 신분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기금의 집행) 신분보장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한다.

1. 산별차원의 조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조합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 일 때는 상근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신분보장기금을 지출했을 때, 이를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4.16. 개정〉](#)

제12조(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장례비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상) 부상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부상 조합원에 대해서는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 치료비 지원 금액은 실비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상근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급 후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4.16. 개정〉

2.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보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지급할 수 있다.
3.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할지라도 현격히 장해가 인정된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구속·수배) 구속 또는 수배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속·수배로 인해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이전 보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구속·수배 중인 조합원에 대한 지원 금액, 지원방법, 기간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은 구속·수배 조합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 개시 직후 및 지원 종료 직후 대의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2013.4.16. 개정〉

2. 체포·구금 되었을 경우에도 구속·수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해고)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른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 이전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지원여부,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기간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은 해고 조합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 개시 직후 및 지원 종료 직후 대의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2013.4.16. 개정〉

2. 해고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 사무처에서 상근 활동하여야 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정직) 조합 활동으로 인해 정직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회사의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정직된 조합원에 대한 지원여부,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기간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은 정직된 조합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 개시 직후 및 지원 종료 직후 대의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2013.4.16. 개정〉

2. 정직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 사무처에서 상근 활동하여야 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감봉·가압류) 조합 활동으로 인해 임금을 가압류 또는 감봉 당한 조합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벌금형) 조합 활동으로 인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소송) 소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조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소송여부, 비용지원여부, 지원방법 등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 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제20조(지원금의 반환)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 배상 받거나, 압류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지원받은 위로금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장 정치기금

제21조(기금의 목적) 정치기금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대중적인 정치사업 집행을 위해 운영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정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조합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기타 조합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23조(기금의 집행) ① 기금의 집행은 정치위원회의의 사업계획에 기초한다.

② 지출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때는 정치위원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출을 승인한다.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치기금을 지출했을 때, 이를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4.16. 개정>

제24조(결산) 정치위원회는 활동보고와 함께, 기금 사용내역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4.16. 개정>

부 칙

제1조(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013.4.16. 개정>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정 이전에 운용되었던 기금은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1. 2004년 총선거금, 정치위원회기금은 정치기금으로 통합한다.
2. 비정규투쟁기금, 한미FTA저지투쟁기금은 투쟁기금으로 통합한다.
3. 2004년 언론개혁기금은 언론개혁기금으로 통합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비 규정

2006년	1월 25일	제14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2월 12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1차 개정
2010년	10월 6일	제11차 중앙위원회	2차 개정
2012년	8월 23일	제27차 중앙위원회	3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4차 개정
2015년	7월 23일	제23차 임시대의원회	5차 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6차 개정
2017년	8월 29일	제27차 임시대의원회	7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1차 정기대의원회	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라 함) 규약 제17조에 따라 조합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하여 조합비의 납부액·납부방식·배정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언론노조 규약 제17조(조합비의 납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금 총액의 1.1%로 한다. 〈2010.10.6. 개정〉

② 임금 총액이라 함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명칭과 상관없이 조합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총액 즉, 상여금과 성과급 및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세전(稅前)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③ 조합원의 고용형태 등에 따라 고정적인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 평균 수입 기준에 따라 납입하기로 하며, 그 기준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017.8.29. 신설〉

제3조(조합비 납부의 방식) [〈2022.2.23. 개정〉](#) ① 조합비는 회사에서 일괄 공제해 언론노조로 직접 납부하고 각 본부·지부로 배분한다. 〈2016.2.25. 개정〉

② 본부·지부는 매월 또는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총수와 조합비 납부 총액을 언론노조 사무처에 보고한다. 〈2016.2.25. 개정〉

제4조(실업자 등의 조합비 납부) ①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매월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실업자, 산재휴가자, 출산 후 휴가자 등의 조합원이 실업급여나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소속 회사가 소멸되었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매월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본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 ⑤ 제4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5조(조합비 납부유예 등) <2015.7.23. 개정>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본부·지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론노조의 예산과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합비 납부유예나 경감, 탕감 결정을 할 수 있다. <2012.08.23. 개정> <2015.7.23. 개정>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1. 조합비가 가압류의 대상이 된 경우
2. 사업장의 임금체불
3. 사업장의 폐업,폐쇄
4. 장기 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
5. 조합원의 신분보장에 따른 비용 발생 및 기타 사유로 조직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2015.7.23. 신설>

② 제1항의 납부유예 결정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납부유예, 경감, 탕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2.25. 개정>

1. 조합비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자료 <2016.2.25. 신설>
2. 납부유예인 경우 유예 조합비의 납부 계획 <2016.2.25. 신설>
3. 탕감, 경감인 경우 정상적인 조합비 납부를 위한 계획 <2016.2.25. 신설>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6.2.25. 신설>

제6조(소득변경의 신고) ①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언론노조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조합비 미납) ①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규약 제14조의 다음의 권리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 할 권리
4.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
7.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② 조합비 체납이 상습적이고 납부계획과 조직활동이 없는 본부·지부는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할 수 있다. <2012.08.23. 신설> <2013.4.16. 개정> <2022.2.23. 개정>

제8조(조합비 등에 관한 자료제출) 각 지.본부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상기의 조합비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14일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관련 제13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은 유효하다.

제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013.4.16. 개정>

■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2005.10.27.)

<조합비 실시팀>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안을 수용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가. 모든 지.본부는 관련 규약(총액 1% 납입, 80% 해당 지.본부 배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나. 조합비 기준을 총액 1%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지.본부 및 총액 1% 기준 총 조합비의 20%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본부는 규약위반이므로 즉각 언론노조 규약대로 시행해야 한다.
- 다. 다만 나)항의 경우, 조합비 현황 조사의 전체적인 미비 및 몇몇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출토록 하되 늦어도 2006년 1월부터는 규약을 준수토록 한다.
- 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조합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합비 현황 조사는 계속하며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마. 2006년 7월부터 조합비를 규약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본부에 대한 징계(규약 및 상벌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은 2006년 하반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바. 제14차 중앙위원회에서 조합비 규정을 신설한다.

회의 규정

2001년	3월 22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9월 7일	제8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11년	9월 22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2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3차 개정
2020년	2월 20일~24일	제30차 온라인 정기대의원회	4차 개정
2021년	1월 26일~27일	제31차 온라인 임시대의원회	5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6차 개정
2022년	7월 28일	산별11대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7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언론노조 규약 제19조에 따라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2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조(출석) ①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에 중앙 사무처 전임이 아닌 부위원장과 무임소 집행위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해당 본부·지부 임원 중 위임장을 지닌 경우는 그렇지 않다. <2013.4.16. 개정> <2021.1.26.~27. 개정> <[2022.2.23. 개정](#)>

② 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대체하여 구성원들 투표방식으로 회의(결의)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자를 출석자로 본다. <2021.1.26.~27. 신설>

제4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3장 의장

- 제5조(의장)** ①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해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7조(서기) 회의 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고,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녹음, 영상촬영 등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2022.7.28. 개정〉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의 내용)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해당 회의에서 선출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021.1.26.~27. 개정〉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재적인원의 수와 출석인원의 수
4.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5. 안건
6. 토론 및 의견요지
7. 표결결과
8. 기타 중요사항

제10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본부·지부, 해당 회의의 성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2.2.23. 개정〉](#)

제1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장 의사의 진행

제12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3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해 개회 전에 회의 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회의 5일 전까지 배포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013.4.16. 개정〉](#)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된다.
3. 대의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할 때는 긴급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를 회의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대해 우선 취급해야 한다.

1. 의사 진행

2. 토론 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한다. [<2022.7.28. 개정>](#)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표현의 사용
2.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3.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4.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 [<2022.7.28. 신설>](#)

제1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해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1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 표결에 부치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 선언 후에는 누구든지 안전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1. 의장은 표결 때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6.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 <2021.1.26.~27. 신설>

제2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6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24조(공개 여부) 회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고,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질서유지) ① 각종 회의의 성원은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 녹음, 영상촬영 등의 행위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22.7.28. 개정>
③ 의장은 제15조를 위반한 발언을 한 성원에 대하여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7.28. 신설>

제7장 온라인 회의에 관한 특례 <2021.1.26.~27. 신설>

제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회의란 회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송수신되는 영상, 음성, 문자,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 일체를 말한다.

2. 원격통신회의란 제1항의 온라인 회의 중 회의 참여자 전부에게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거나 최소한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3. 전자투표란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온라인 회의의 사유와 방식) ① 온라인 회의 개최 여부와 방식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의 소집권자가 정할 수 있다.

② 총회, 대의원회의 온라인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별도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회의 소집권자가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총회,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온라인 회의 개최를 의결한 경우
- ③ 총회, 대의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온라인 회의는 원격통신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원격통신회의 외 다른 방식의 온라인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대체하여 구성원들 투표방식으로 회의(결의)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
- ⑤ 온라인 회의를 할 경우 회의 소집권자는 그 방식을 회의 소집시 공지하고, 회의 구성원의 회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온라인 회의의 성립) ① 온라인 회의에서는 구성원이 해당 회의에서 이용되는 영상, 음성, 문자, 전자투표 등을 송수신하는 전자장치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것을 회의 출석으로 본다.

② 의장은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한 자가 회의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장 비용 <2007.9.7. 신설>

제30조(회의수당) <2007.9.7. 신설> ①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회 참석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사무처상근자는 예외로 한다. <2013.4.16. 개정>

② 회의수당은 개최지 도시까지의 고속철도 일반석(우등 고속버스) 왕복 운임의 70%를 지급한다. 단, 제주지역은 회당 15만원으로 한다. <2011.9.22. 개정> <2020.4.20.~24. 개정>

제31조(토론회사례비) <2011.9.22. 신설> ① 언론노조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다.(언론노조 집행부는 제외)

② 비용은 발제자 50만원, 토론자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1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2차 개정
2023년	2월 9일	제36차 정기대의원회	3차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민실위’라 한다.

제2조(목적) 민실위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언론의 편집권 독립, 민주언론 실천, 언론인 윤리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한다.

제3조(구성과 역할) ① 민실위는 민실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규약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민실위는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023.2.9. 개정〉](#)

③ 민실위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④ 민실위는 2001년 11월 24일 발표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이 전 언론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⑤ 민실위는 조합원이 취재활동과정에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민실위는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 및 기관지를 통해 공개한다.

⑥ 조합은 민실위를 중심으로 본부·지부 내 민실위 설치 및 활동을 지원한다. [〈2022.2.23. 개정〉](#)

제4조(활동) 민실위는 방송·신문·출판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민실위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민실위는 언론을 감시, 비평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는다.
2. 민실위원은 조합의 민실위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민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민실위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지부 민실위) 조합 산하 각 본부·지부는 민주언론 실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제8조(자문위원회) 민실위는 조합의 민주언론 실천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진보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치위원회 규정

2004년	2월 11일	제 8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2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3차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정치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정치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①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007.9.7. 신설〉

- ②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 ③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 ④ 정치위원장은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정치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013.4.16. 개정〉
2.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본)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본)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정치위원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정치위원은 조합 정치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정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치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지부 정치위원회) 조합 산하 본부·지부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2022.2.23. 개정〉](#)

제8조(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재정)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정치기금으로 집행한다.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영규정을 따른다.

성평등위원회 규정

2017년	8월 29일	제27차 임시대의원회	제정
2021년	6월 28일	제34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2차 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성평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성평등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성평등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사업 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사업
2. 성별 간 고용차별 철폐를 통한 평생노동권 확보 사업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 철폐 사업
4. 남성 우위의 의식적, 법률적, 관습적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5.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를 확대하며 평생일터 확보 사업
6.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7. 국제연대 사업
8. 기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성평등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021.6.28. 개정)
2.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본)부의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지(본)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조합 성평등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 지역·업종별 협의회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지부 성평등위원회) 조합 산하 본부·지부는 여성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부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2022.2.23.개정〉](#)

제8조(자문위원회) 성평등위원회는 조합의 성평등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규정

2023년	2월 9일	제36차 정기대의원회	제정
2024년	1월 25일	산별 12대 제10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1차 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조합의 강령과 규약, 사업 방침에 따라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조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 내 비정규직 노동인권 인식 개선 사업
2. 미디어노동공제회 품목 개발 등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업
3. 타 공제회와 연대 및 연계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위원장 및 비정규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 등 약간 명과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임면 등) ①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면한다.

②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위원은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미디어노동공제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근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위원은 미디어노동공제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 재정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② 미디어노동공제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 규정

2001년	3월 22일	제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08년	7월 17일	제10차 임시대의원회	2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3차 개정
2017년	8월 29일	제27차 임시대의원회	4차 개정
2021년	1월 26일~27일	제31차 임시대의원회	5차 개정
2023년	2월 9일	제36차 정기대의원회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노조 규약 제31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약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2013.4.16. 개정〉

제3조(선거권) 임원 선거권은 규약 제22조에 따라 본부·지부별로 공정하게 선출된 언론노조 대의원에게 있다.

제4조(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언론노조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규약 제17조 및 제50조에 따라 제명, 정권, 권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2013.4.16. 개정〉

제5조(실시시기) 임원 임기 만료 15일 이전에 차기 임원선출을 완료한다. 현 임원과 당선자는 임기 시작일 이전에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2007. 9. 7. 신설〉

제5조의 2(선출방식) 〈2021.1.26.~27. 신설〉 ① 임원 선출 방식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방식(이하 ‘현장투표’)
2. 온라인회의에서 이뤄지는 전자투표 방식
3. 대의원회(온라인회의 포함) 개최 이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행해지는 사전 전자투표 방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전 전자투표는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이뤄지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23.2.9. 개정>

③ 제1항 제2호, 제3호상의 전자투표의 종류와 방식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비밀·무기명 선거가 필요한 임원 선출의 경우 해당 전자투표 방식이 위 투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3.2.9. 개정>

제6조(사무처 선거중립) ① 사무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을 지킨다. <2008. 7. 17. 신설>

② 사무처는 위 1항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관위 결정으로 선거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2017.8.29. 신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전까지 7인을 선출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013.4.16. 개정>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13.4.16. 개정>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5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고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 협조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9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절 입후보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

② 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25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결선투표를 하여야 하는 경우 결선투표일과 투표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2021.1.26.~27. 신설〉

제11조(입후보 등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신청서\(별첨 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해야 한다.

제12조(추천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5개 이상 본부·지부에 소속된 언론노조 대의원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다른 입후보 조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13조(재등록 공고 등)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자격심사) ①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15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방식으로 선거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2021.1.26.~27. 개정> [\(2023.2.9. 개정\)](#)

제18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9조(선거선전물 발행) ①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 때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가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비용은 언론노조에서 지출한다.

제20조(합동연설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회 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

제21조(유세활동비 지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유세활동비로 임원 입후보자 당 20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07.9.7. 신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2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23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언론노조의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4조(현장투표) [제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장투표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2021.1.26.~27. 개정> <2023.2.9. 개정>

1. 투표소는 회의장 내에 설치한다.
2. 투표지 교부 때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뒤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3.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다. <2021.1.26.~27. 신설>

제25조(전자투표)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전자투표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2021.1.26.~27. 신설> <2023.2.9. 개정>

1. 전자투표는 ARS, 모바일, 이메일 및 기타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전자투표 안내의 발신, 투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투표의 종류와 기술적 시스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투·개표 절차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투표 관리를 담당하는 자 및 그 위탁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개표 시기 전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투표함 확인 등) ① 현장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뒤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 <2021.1.26.~27. 개정>

② 전자투표의 경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참관인의 적정한 참관방식은 해당 전자투표의 종류와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021.1.26.~27. 신설>

제28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단, 전자투표 개표의 경우에는 [제25조 제3호](#)에 따라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개표절차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21.1.26.~27. 개정> <2023.2.9. 개정>

제29조(무효표) ① 현장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2021.1.26.~27. 개정>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있는 투표지

② 전자투표의 경우 무효표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021.1.26.~27. 신설>

제30조(당선)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1.1.26.~27. 개정>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선거가 경선이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가 2개팀이면 최다득표팀에 대해, 후보가 3개팀 이상이면 1, 2위 득표팀으로 한정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021.1.26.~27. 개정>

③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단, 회계감사 입후보자 중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021.1.26.~27. 개정>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31조(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2조(보궐선거) ① 위원장 유고 때는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를 소집, 보궐 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보선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6절 이의신청

제33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뒤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34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노조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반,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위원장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 수석부위원장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추천자 성명

번호	소속	성명	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 필증

■ 입후보자

1) 위원장 후보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2) 수석부위원장 후보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위 동지들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로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20__년 __월 __일 정기 대의원회에서 실시될 전국언론노동조합 제 __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호	성명	소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본부(지부)	직위			
1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2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3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년 월 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 전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선거관리위원회 직 인
--	-------------------------------	--------------------

■ 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__대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선거			
기호	직위	성명	기표
1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 후보		
2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 후보		

■ 후면 - 단일 후보시

제 __대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선거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 후보	
찬성	반대

투표참관인증	
기호 ○ 번 ○○○ 후보자	
소속	
성명	
<p>위 조합원은 조합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한 기호 ○번 후보자의 투표 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p>	

투표참관인증	
기호 ○ 번 ○○○ 후보자	
소속	
성명	
<p>위 조합원은 조합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한 기호 ○번 후보자의 투표 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p>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과 보고

20__년 __월 __일 정기 대의원회에서 실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호		성명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2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3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년 월 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 결정 공고

20__년 __월 __일 정기 대의원회에서 실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결과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호		성명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2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3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2. 최종당선인

기호 ○ 번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년 월 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인)

지도위원 ·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2차 개정
2023년	2월 9일	제36차 정기대의원회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노조 규약 제33조에 따라 두는 지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2.25. 개정〉〈2023.2.9. 개정〉

제2조(위촉) 지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은 규약 제32조 1항에 따른다. 지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한다. 〈2013.4.16. 개정〉〈2016.2.25. 개정〉

1. 지도위원

- 가. 노동운동 및 언론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 인사 또는 전직 임원
- 나.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지도적 인사

2. 자문위원

- 가. 노동운동 및 언론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사
- 나. 언론 현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사

3. 전문위원 〈2016.2.25. 신설〉

- 가. 방송, 통신, 신문 등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
- 나. 언론노동조합의 강령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자

제3조(호칭)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임무와 역할에 맞도록 대외협력위원, 정책위원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제4조(역할)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지도위원

- 가. 언론노조 중요사업의 계획과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지도 및 자문을 행한다.
- 나. 언론노조의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2. 자문위원

- 가. 언론노조 중요사업의 계획과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행한다.

나. 필요가 있을 경우 언론노조의 각종 위원회 또는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자문을 행한다.

다. 필요에 따라 언론노조의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조합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임위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한다.
3. 상임위원은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합하여 3인 이내로 한다.
4. 비상임위원은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합하여 3인 이내로 한다.
5.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사무처 실·국에 배치할 수 있다.

제6조(대우) 언론노조는 지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대우한다. 〈2016.2.25. 개정〉

1. 상임위원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처무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 상임위원 대우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조합과 상임위원 간 별도 합의로 대신할 수 있다.
3. 비상임위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2016.2.25. 개정〉

제7조(회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언론노조의 협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 대하여 관계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처무 규정

2001년	12월 14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2월 11일	제8차 중앙위원회	1차 개정
2007년	9월 7일	제8차 임시대의원회	2차 개정
2008년	1월 30일	제21차 중앙위원회	3차 개정
2011년	2월 17일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4차 개정
2011년	9월 22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5차 개정
2012년	3월 7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6차 개정
2012년	11월 29일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7차 개정
2013년	2월 6일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8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9차 개정
2014년	2월 11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10차 개정
2016년	10월 14일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11차 개정
2017년	7월 21일	산별 9대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12차 개정
2019년	7월 22일	산별 10대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13차 개정
2021년	3월 25일	산별 11대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14차 개정
2022년	12월 22일	산별 11대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15차 개정
2023년	1월 26일	산별 11대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16차 개정
2023년	3월 23일	산별 12대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17차 개정
2023년	10월 26일	산별 12대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18차 개정
2023년	11월 2일	산별 12대 제8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19차 개정
2024년	1월 25일	산별 12대 제10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2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조합의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013.4.16. 개정〉

제2조(기본이념) 이 규정은 성원의 책임감, 자주성, 협력의식 및 창의성을 길러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합 활동에 최대한 기여토록 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해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책무) 사무처의 성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과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전체 조합원의 봉사자로서 서로 협조해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도 창의적으로 수행한다.

제2장 구성과 업무

제5조(구성) 조합 사무처에는 다음의 전문 실·국 및 부서 등을 설치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 폐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총무기획실 <2007.9.7. 개정> <2019.7.22. 개정> <2023.10.26.개정>
2. 정책실 <2021.3.25. 개정> <2023.10.26.개정> <2024.1.25. 개정>
3. 조직쟁의실
4. 대외협력홍보실 <2023.11.2. 개정> <2024.1.25. 개정>
5. 법규국 <2024.1.25. 개정>
6. 기타 필요에 따른 실·국 설치 <2014.2.11. 개정>

제6조(각 실·국의 임무) 각 실·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기획실 <2007.9.7. 개정> <2019.7.22. 개정> <2023.10.26.개정>
 - 사무처 성원의 인사 관리
 - 사무처 성원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관리
 -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재정운영 및 금전 출납
 - 조합원 명부 관리
 -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문서의 수발 관리, 보관 및 폐기 처분
 - 조합원 교육 계획 수립
 - 산별 발전 전략 기획
 - 기타 사무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2. 정책실 <2019.7.22. 개정> <2021.3.25. 개정> <2023.10.26.개정> <2023.11.2. 개정> <2024.1.25. 개정>
 - 민주언론 실천을 위한 언론개혁 정책 활동
 -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 비정규, 성평등 정책 활동
- 조직발전 전망 연구, 조사
- 기타 요구되는 제반 정책 연구

3. 조직쟁의실 <2019.7.22. 개정> <2023.3.23. 개정> <2024.1.25. 개정>

- 조직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 조직의 확대, 강화사업
- 각 협의회 및 본부·지부 활동 지원
-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략 조직 사업

4. 대외협력홍보실 <2023.11.2. 개정> <2024.1.25. 개정>

- 국내외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사업
- 정부, 국회 및 유관기관 관련 대외 업무
- 기관지의 편집, 발간 및 배포
-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사업
- 언론노조 대외 홍보 기획 및 활동
- 조합원 선전 자료 및 지침의 수립

5. 법규국 <2024.1.25. 신설>

- 노조 운영 및 쟁의 관련 및 법률지원 사업

제7조(기밀보장)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3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8조(운영)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 유고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사무처장의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③ 각 실·국장의 일상 업무는 해당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④ 각 실·국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위원장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제9조(기능) 사무처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논의

2.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의 결정 사항 집행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각 국의 업무 조정 심의
5. 기타 사항

제10조(회의) ① 사무처 회의는 정례화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성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문서 관리 및 처리

제11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 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국장의 결재 뒤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022.12.22. 신설〉](#)

제12조(결재, 시행)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해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뒤 총무실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2007.9.7. 개정〉](#) [〈2019.7.22. 개정〉](#) [〈2023.1.26. 개정〉](#)

②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시행한다. [〈2007.9.7. 개정〉](#)

제13조(위임전결) 직무의 전결 및 대결처리는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2007.9.7. 신설〉](#)

1. 전결 및 대결권자는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전결 권한의 행사는 그 권한을 가진 직위의 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는 그 직을 대행하는 자 또는 그 직상위자가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한다.
4. 위임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내용	전결권자	
	사무처장	실·국장
1.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 후속조치 및 시행문서	○	
2. 사무처 실·국장의 근태 (임원은 제외)	○	
3. 실별 성원의 근태		○

4. 국내출장명령 (임원은 제외)	○	
5. 보존문서 관리 및 처리	○	
6. 제 증명발행		○
7. 차량관리		○
8. 신문 및 잡지구독 신청		○
9. 정례화 된 조직현황, 투쟁속보, 주지사항 통지		○
10. 초청장, 안내장	○	
11. 인장관리	○	

제14조(접수 및 발신)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담당실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 한다. <2019.7.22. 개정> <2022.12.22. 개정>

② 모든 도착 문서는 담당실에서 개봉, 접수대장 기재, 임원보고 등을 처리하고, 관련 실과 공유한다. <2019.7.22. 개정> <2022.12.22. 개정>

③ 결재를 얻은 공문 등의 문서는 담당실에서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뒤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한다. <2019.7.22. 개정> <2022.12.22. 개정>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5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문서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 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하거나 전자파일로 관리, 보관할 수 있다. <2022.12.22. 개정>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③ 결재문서는 총무실에서 보관한다. <2022.12.22. 개정>

제17조(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전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3.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항 이외의 것 - 5년
4. 전 3항 이외의 문서 - 3년 <2013.4.16. 개정>

구분(보존기간)	조합	본부.지부
2항(영구)		
3항(5년)	각종 대의원회	대의원회
4항(3년)	회의자료(중앙집행위원회)	
1년	사무처 회의 자료	

- 제18조(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5장 간행물 및 도서

- 제19조(간행물) ① 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홍보실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2023.1.26. 개정〉](#)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실에서 발행한다.

- 제20조(도서 및 신문) ①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해 자료실 또는 관계 실에 보관한다.
 ② 조합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총무실에서 실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종류 및 구독부수를 조정해 결정한다.
 〈2019.7.22. 개정〉 [〈2023.1.26. 개정〉](#)

제6장 인사

- 제2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원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파견근무자를 제외한 상근자, 계약직, 임시직
 2. 임용 : 직제 상 편성된 인원이 소정의 임명절차를 거쳐 조합에 근무하게 됨.
 3. 직무 : 성원이 그 능력 및 적성에 따라 맡는 특정업무
 4. 직위 : 성원이 직제 상 맡는 일정한 직책
 5. 승호 :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이동함
 6. 승진 :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이동함
 7. 의원면직 : 본인이 원해 성원으로서의 신분이 해제됨
 8. 해고 :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성원의 신분이 해제되고 면직됨

제22조(임면) 사무처 성원의 임면권은 조합 위원장이 가지며 규약 제3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사무처장이 임면 제청한다. [〈2013.4.16. 개정〉](#) [〈2023.1.26. 개정〉](#)

- 제23조(임용) ① 사무처 성원의 임용은 조합원의 전임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에서 채용한 성원은 공개채용 등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② 사무처 성원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본인의사를 존중해 제26조 자격기준과 제27조 직책소요연수에 따라 임용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임용과 동시에 필요한 직책을 결정해 시행한다.

제24조(임용일자) ①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는 매월 1, 10, 20일자로 하고 발령장은 인사발령 통지로 대신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1. 조합 자문위원
2. 조합 고문
3. 조합 자문변호사 및 자문노무사
4. 기타 조합 외부 인사에게 조합의 주요 업무를 위촉하는 경우

제25조(제출서류) 채용 임용된 성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자필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서류제출직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4.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26조(채용자격기준) 사무처 성원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채용한다.

1. 언론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민주노동조합운동 경력과 이해성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4. 조직적인 규율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직책소요연수) ① 사무처 실·국장, 부장, 차장은 다음 각 호의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017.7.21. 개정>

1. 실·국장 : 노조 및 사회운동, 유관부서 업무, 조합근무경력 합산 10년 이상
2. 부국장 : 노조 및 사회운동, 유관부서 업무, 조합근무경력 합산 8년 이상
3. 부장 : 노조 및 사회운동, 유관부서 업무, 조합근무경력 합산 6년 이상
4. 차장 : 노조 및 사회운동, 유관부서 업무, 조합근무경력 합산 5년 이상
5. 차장대우 : 경력5년 미만의 신규채용자

② 본부·지부조합원, 전향과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서열) 인사서열은 실·국장, 부국장, 부장, 부장대우, 차장, 차장대우, 기타 성원으로 한다. 단, 같은 호봉, 같은 직위일 경우 중앙사무처 근속연수로 하고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연장자 우선 순위로 한다.

제29조(임용자 호봉) ① 신규임용자의 호봉은 보수규정의 호봉표에 따른다.

② 경력환산은 조합에서 필요한 경력을 100% 인정하고 경력 인정여부 및 환산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종류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30조(임금 등) 임금, 경조금 등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직

제31조(보직의 원칙) 보직은 성원의 자격요건, 근무성적, 기타 조합의 필요성을 고려해 능력에 따라 보직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책임자 보직) ^{<2021.3.25. 개정>} ① 각 실·국에는 장을 1명두고, 필요한 경우 부실장, 부국장, 부장(부장대우), 차장(차장대우)을 보직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된 임용자를 책임자로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로 호봉을 부여하고, 일체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3조(겸직) 성원은 필요에 따라 겸직할 수 있고, 겸직한 직무가 다른 등급일 때는 상위등급 직무를 주직무로 한다.

제34조(겸직금지) 사무처 파견전임자와 채용성원은 다른 조직(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민주노총과 연맹, 조합의 방침으로 결정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2022.12.22. 개정>](#)

제35조(직무대리) 상위자가 공석일 때는 하위자를 직무대리로 보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6조(보직변경 및 이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성원의 보직을 변경하거나 실 간 이동시킬 수 있다.

제37조(임시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근무자를 위원장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 제38조(인사기록부) ① 성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인사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한다.
- ② 인사기록부는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 이외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인사기록담당자는 기밀을 지켜야 한다.

제8장 퇴직

제39조(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년도의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 가. 본인 사망
 - 나.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다. 휴직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유 없이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라. 사무처의 성원은 채용과 동시에 노동조합(언론노조 사무처지부)에 가입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2024.1.25. 신설〉](#)
4. 징계해고 : 상벌규정에 따라 해고가 결정됐을 때

제40조(퇴직금) ① 실제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산정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 ② 사무처성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여부는 퇴직적립금 적립현황을 감안하여 사무처장이 정한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익일부터 계산하며 퇴직금 정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근속년수는 인정된다. [〈2007.9.7. 신설〉](#)
- ③ 사무처성원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예상퇴직금의 80% 이내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대출자의 퇴직금은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조합이 권리를 갖는다. 예상퇴직금 산정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 실시여부,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007.9.7. 신설〉](#)
- ④ 생활자금 대출 이율은 연 3.0%로 한다. [〈2007.9.7. 신설〉](#)
- ⑤ 사무처장은 퇴직적립금 적립현황을 감안하여 중도에 대출관련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007.9.7. 신설〉](#)

제9장 근무

제41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계절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7.9.7. 개정〉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제42조(지각, 조퇴)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각 실·국장을 경유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9.7.22. 개정〉 [〈2022.12.22. 개정〉](#)

제43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실·국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4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할 때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실·국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5조(외부 수탁 업무) 〈2007.9.7. 신설〉 ① 정해진 업무 외에 언론노조 강령과 규약에 부합하는 외부 수탁연구사업, 집필, 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언론노조 명의를 외부수탁 연구사업이나 집필사업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결과와 결산내역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외부 수탁에 의한 연구사업, 집필사업 등에 대해 사무처성원은 해당 연구사업예산에서 조사비,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외부토론회 등에 참석할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은 급여 외 개인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0장 출장

제46조(출장) ① 사무처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 성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은 담당자가 기안(여러 명 취합 가능)하고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승인한다. [〈2022.12.22. 개정〉](#)

제47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뒤 즉시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출장의 취급) 출장기간은 정상근무기간으로 본다.

제49조(출장 업무 및 활동) ① 휴일 혹은 공휴일에 출장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대휴를 실시한다.

② 지나친 향응을 받는 것이나 과도한 회식비 지출은 자제한다.

제50조(출장 및 여비의 종류) 출장 및 여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출장 및 여비
2. 해외 출장 및 여비

제51조(국내 출장비 지급 및 기준) [〈2022.12.22. 개정〉](#)

①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사무처 성원은 다음 기준으로 출장경비를 사용한다.

1. 각종 경비 [〈2007.9.7. 개정〉](#) [〈2022.12.22. 개정〉](#) [〈2024.1.25. 개정〉](#)

가. 교통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이용한다.

- 제주 : 비행기
- 수도권 외 지역 : KTX, 새마을호 또는 우등고속버스 기준
- 수도권 :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업무용, 개인용)

나. 숙박비 : 1인 1일 최대 10만원 이내 실비 정산

다. 식비 : 1인 1식 최대 1만 5천원 이내 실비 정산

라. 일비 : 언론노조 사무실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이하 출장은 1박에 3만 원, 그 이상 출장은 1일에 3만 원의 출장수당을 지급한다.

② 모든 출장은 사전에 기안한다. 단, 긴급할 경우 사무처장의 허락을 받아 당일 처리 할 수 있다. [〈2022.12.22. 개정〉](#)

③ 출장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개인금액 사용시 한달 이내 사후 정산한다. [〈2022.12.22. 신설〉](#)

제52조(해외 출장) ① 해외에 출장 때는 전 조의 규정에 준해 행선국에 따라 항공료 숙박비 등을 고려해 출장비를 지급한다.

② 초청자가 체재비 등 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장 휴일, 휴가 등

제53조(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일요일 [〈2007.9.7. 개정〉](#)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노동절(5월 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5. 사무처장은 업무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 항의 휴일을 변경해 다른 날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4조(연차 유급휴가) <2007.9.7. 개정> <2011.9.22. 개정> <2019.7.22. 개정>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② 연차 유급휴가는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1.9.22. 신설>

③ 업무상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못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 사용기로 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9.7.22. 개정>

제55조(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실시한다. <2012.3.7. 개정> <2024.1.25. 개정>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1일(지역 2일)
3.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의 회갑 - 1일(지역 2일)
4. 부모의 형제·자매의 칠순 - 1일
5. 배우자의 출산 - 10일
6.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승중상 - 7일
7.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형제자매 상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 - 1일
9. 직계존속 제사 - (지역 1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휴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해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제4호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3. 주거지를 옮길 때(이사)
4. 초과 근무 - 초과근무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초과근무 신청, 보상휴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22.12.22. 신설> <2024.1.25. 개정>

③ 장기근속 간부에 대해 유급 안식휴가를 준다. <2013.2.6. 개정> <2022.12.22. 개정>

- 5년간 만근 시마다 2개월
- 유급은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 발생한 시점부터 1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원과 합의 후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유예가능하다.
-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유예시킨 후 미사용 시 소멸한다.

④ 각종 휴가는 실·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당일 휴가 등 갑작스러운 휴가의 경우 구두 승인 후 사후 결재할 수 있다. [〈2022.12.22. 신설〉](#)

제56조(모성보호) 사무처 여성 성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산전산후 휴가 등 모성보호를 보장한다.

제57조(육아휴직) 사무처 성원 중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줄 수 있다.

제58조(휴직)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휴직기간

- 가.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 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 - 1년 이내(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무급
- 다. 병가 - 60일 이내 유급
- 라. 육아휴직 - 1년 이내 유급
- 마.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 바. 기타 필요한 경우

2. 휴직자 대우 〈2011.2.17. 신설〉

- 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휴직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때는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나.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승호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시점까지 발생한 휴가,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병가를 원하는 성원은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라. 휴직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병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58조의 1(휴직 특례) 〈2012.11.29. 신설〉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질병의 진행정도, 근무경력, 기여도, 활동내용, 개인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58조(휴직)에 규정된 종류 이외의 유급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중집은 위 판단기준을 기초로 하여 유급 기간을 결정한다. 이 때 유급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고, 중집 결정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며, 치료비는 중집에서 지급유무를 포함해 1년 총 인건비 규모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59조(건강관리)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 홀수 년마다 신경정신과 진단을 할 수 있게 한다. 단 모든 사무처 성원은 5년에 1회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13.2.6. 신설〉

2. 격년 단위로 가족 1인에 한해 종합건강진단을 받게 해 지속 가능하며 행복한 노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2013.2.6. 신설〉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60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61조(포상)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의 포상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 뒤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부쳐 그 의결로 표창한다.

1. 언론노조운동 및 언론운동, 언론민주화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사무처 업무수행에 공로가 큰 자
3. 기타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고 필요에 따라 부상을 줄 수 있다.

1. 특별 승진 및 특별 승호
2. 유급휴가
3. 표창
4. 격려금 등 〈2016.10.14. 신설〉

제62조(징계)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했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해 징계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근무규정 및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을 때
2. 직무유기 했을 때
3.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4. 조합의 기밀을 일부러 누설하거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5. 사적행위로 형사상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다른 성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 체계를 이행치 않았을 때
8.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했을 때
9. 다른 성원에게 폭력적 언행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을 때
10.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할 문서를 보류, 방치, 은닉, 폐기해 업무에 차질을 줬을 때

제63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고 : 반성토록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호봉 또는 급여를 감한다(단, 통상임금의 1/20 이내로 한다).
3. 정직 : 3개월 이내에서 출근을 정지하고 근신케 한다(무급).
4. 해고 : 즉시 면직 처리한다. 단, 조합에 고의로 입힌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자로 하여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케 한다.

제64조(징계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성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준다. 해당 성원이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 개최 때는 사유, 대상자,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해 위원회 개최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3. 징계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재심결정 때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65조(징계감면) 위원장은 징계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장 인사위원회

제66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 맡는다.

- ② 인사위원회 재심 기구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상임 임원 회의로 한다.
- ③ 인사위 위원장은 결정사항을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한다.
- ④ 징계 인사위원회에는 사무처지부에서 1인 참석 또는 추천할 수 있다. [<2022.12.22. 신설>](#)

제67조(인사위원회 임무) 인사위원회에서는 성원의 임용 및 승진, 징계, 조합이 실시하는 포상 가운데 표창, 기타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68조(인사위원회 소집 및 성립) ①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조합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인사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9조(서면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주 단순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는 서면으로 회부해 심의할 수 있다.

제70조(인사위원회 결정사항 기록)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정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71조(교육) ① 성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기본계획을 세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3. 해외 파견교육
4. 해외 시찰 및 견학교육

③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비를 1인당 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할 수 있다.

[〈2022.12.22. 신설〉](#)

제72조(교육훈련 기록) 성원의 교육훈련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15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24.1.25. 신설〉](#)

제7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조합 전임 임원 및 간부, 사무처 성원이 사무처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성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5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원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조사가 접수되면 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사건의 조사) ①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피해자의 보호) ① 조합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성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성원(이하 “피해성원 등”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성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은 피해성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성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78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성원의 의견을 듣는다.

제16장 기타

제73조(적용) 조합 전임 임원 및 간부에 대하여는 본 규정의 [제6장\(인사\)](#), [제9장\(근무\)](#), [제10장\(출장\)](#), [제11장\(휴일 및 휴가\)](#)을 적용한다.

제74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5조(개정) 처무규정은 일상적인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규정개정 직후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7.9.7. 개정〉 〈2013.4.16. 개정〉

보수 규정

2001년	12월 14일	제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2월 11일	제 8차 중앙위원회	1차 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2차 개정
2008년	1월 30일	제21차 중앙위원회	3차 개정
2010년	2월 4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4차 개정
2011년	2월 17일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5차 개정
2011년	9월 22일	제 6차 중앙집행위원회	6차 개정
2012년	3월 7일	제 9차 중앙집행위원회	7차 개정
2013년	2월 6일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8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9차 개정
2014년	9월 16일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10차 개정
2016년	1월 28일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11차 개정
2016년	10월 14일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12차 개정
2017년	1월 12일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13차 개정
2017년	7월 21일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14차 개정
2018년	1월 25일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15차 개정
2018년	7월 12일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16차 개정
2019년	5월 16일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17차 개정
2019년	7월 22일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18차 개정
2022년	1월 27일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19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20차 개정
2022년	10월 27일	산별 11대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21차 개정
2022년	12월 22일	산별 11대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23차 개정
2023년	1월 26일	산별11대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24차 개정
2024년	1월 25일	산별 12대 제10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2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앙사무처 성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는 성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직무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체의 금품과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전임자에 대해 적용한다.

1. 중앙사무처에서 채용한 성원
2. 중앙사무처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조합 임원 및 간부

제4조(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25일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국민연금
2.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의무금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재형저축금, 조합 및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제2장 보수

제6조(임금)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을 보장한다.

1.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같은 나이와 경력을 가진 다른 연맹 및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2.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파견 전임자의 임금은 해당사업장의 임금을 적용하여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과 금액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3.4.16. 개정>

제7조(임금조정) 조합 사무처 전임자의 임금 조정은 정기 승호에 따른다. <2014.9.16. 개정>

제8조(수당 및 활동비) ① 조직파견자의 직책수당 및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직책수당 : 위원장 1백만원, 수석부위원장 60만원, 상근부위원장 50만원, 사무처장 50만원, 실.국장 및 성원 30만원
2. 통신비 지원 : 사무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007.9.7. 신설> <2022.10.27 개정>

3. 조직파견자가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규정 지급항목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2022.10.27 신설〉](#)

4. 활동비 지원 : 주요 행사 관련 지출은 사전에 충분히 인정받아 지출하고 사후 지출영수증을 첨부해 정산한다. 행사 관련 내용과 참석인원을 반드시 영수증 이면에 명기한다.

가. 직무활동에 따른 3만원 이하의 지출이나 공식적인 직무활동이 아닌 개인적 행사의 경우 자신의 직책수당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원들이 주요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총액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한다.

5. 지역파견자 지원 : 지역 조직에서 파견된 성원의 교육비등을 지원 [〈2010.2.4. 신설〉](#)

② 채용 간부 및 성원의 직책수당과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직책수당 : 실.국장 30만원, 부국장 25만원, 부장 20만원, 차장 10만원, 차장대우 5만원. 단, 공인노무사 등 업무에 관련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10만원 이내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7.9.7. 개정〉](#) [〈2017.7.21. 개정〉](#)

2. 통신비 지원 : 매월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성원은 실비로 지급한다. [〈2007.9.7. 신설〉](#) [〈2017.1.12. 개정〉](#)

3. 활동비 지원 : 조직파견자 규정에 준한다.

4. 식비 :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2008.1.30. 개정〉](#) [〈2018.1.25. 개정〉](#) [〈2024.1.25. 개정〉](#)

5. 교통비 : 매월 8만원을 지급한다. [〈2008.1.30. 개정〉](#) [〈2012.3.7. 개정〉](#) [〈2024.1.25. 개정〉](#)

6. 원거리 생활자는 매달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2013.2.6. 신설〉](#)

③ 가족수당 : 1인 2만원으로 4인까지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증가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추가 지급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실제 부양할 경우도 포함) [〈2013.2.6. 개정〉](#)

④ 근속수당 : 조직파견자 및 채용성원은 1년 이상 근무시 2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1만원씩 증액 지급한다. 단, 20년부터 근속과 무관하게 20만원으로 지급한다. [〈2010.2.4. 개정〉](#) [〈2012.3.9. 개정〉](#) [〈2017.1.12. 개정〉](#) [〈2022.1.27. 개정〉](#)

근속년수	금액	근속년수	금액
1년 이상	2만원	11년 이상	12만원
2년 이상	3만원	12년 이상	13만원
3년 이상	4만원	13년 이상	14만원
4년 이상	5만원	14년 이상	15만원
5년 이상	6만원	15년 이상	16만원
6년 이상	7만원	16년 이상	17만원
7년 이상	8만원	17년 이상	18만원
8년 이상	9만원	18년 이상	19만원

9년 이상	10만원	19년 이상	20만원
10년 이상	11만원	20년 이상	20만원

⑤ 자녀지원금 : 자녀 1인 이상은 자녀수 상관없이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매월 15만원을 자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2018.1.25. 개정(누락조항 명시)> <2022.12.22. 개정>

제9조(법정수당)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정액 지급한다.

1. 초과근로수당 : 채용성원에 한해 임원의 직접적인 지시로 결재를 받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집회 및 출장 등 외부 일정의 경우 대휴를 사용한다. <2008.1.30. 개정> <2010.2.4. 개정> <2022.12.22. 개정>

2. 연차수당 : 근속 1년이 지나지 않은 성원은 근속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 근속 1년이 지난 성원은 다음해에 15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근속연수가 매 2년 증가할 때마다 1일씩 휴가일수를 가산하되 최대 25일을 넘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하되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남은 휴가일수에 월급여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지급한다. <2008.1.30. 개정>

제10조(상여금 등)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로 하고 1월, 4월, 7월, 10월 급여시 50%씩 지급한다. 조합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4.9.16. 개정> <2016.10.14. 개정> <2017.1.12. 개정> <2023.1.26. 개정>

제11조(산전.산후휴가 급여 및 업무상 재해, 병가 급여) <2011.2.17. 개정> ① 채용 성원 중 출산으로 인한 90일(3개월) 휴가중인 자에게는 60일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2018.7.12. 개정>

② 1의 금액은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80%이다.

③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과 병가중인 성원에게는 매달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2011.2.17. 신설>

제12조(육아휴직 급여)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무처 성원은 1년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022.12.22. 개정>

② 육아휴직중인 성원에게는 육아휴직기간의 매달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13조(경조금 지급) 사무처 성원 중 다음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2012.3.7. 개정>

1. 축의금

가. 본인 결혼 : 50만원

나. 자녀 결혼 : 30만원

다. 부모 고희연 및 배우자 부모 고희연 : 30만원

라. 자녀 출산 : 10만원

2. 조의금

가. 본인 사망 : 2백만원

나. 배우자 사망 : 100만원

다. 부모 사망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50만원

라. 자녀 사망 : 50만원

마.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 30만원 [〈2024.1.25. 개정〉](#)

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20만원 [〈2024.1.25. 개정〉](#)

사. 승중상 : 20만원

3. 위로금

가. 공상의 경우 : 본인 입원(완치될 때까지) ----- 치료비

나. 사상의 경우 : 본인 입원(7일 이상) ----- 10만원

제14조(본부·지부장 경조금 지급) [〈2011.9.22. 신설〉](#) [〈2022.2.23. 개정〉](#) ① 언론노조 전현직 본부·지부장 부모상(처부모 포함)에 조화를 발송한다.

② 공식적인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하되 임원의 판단으로 지급 할 수도 있다.

제3장 승진 및 호봉

제15조(승진) 채용 성원의 승진은 근무 성적, 경력, 능력, 성원간의 형평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승진 및 승호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원은 승진 및 승호를 제한 받는다.

1. 무급휴직 중인 자

2.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정직처분을 받은 자 : 12월

나. 감봉처분을 받은 자 : 감봉기간

다. 견책처분을 받은 자 : 1월

제17조(호봉산정) 채용 성원의 보수 중 기본급은 별첨과 같은 호봉표에 의해 결정되며, 각종 경력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호봉을 산정한다.

1. 신입 성원은 1호봉 부여 [〈2012.3.9. 개정〉](#) [〈2022.12.22. 개정〉](#)

2. 언론 및 관련 산업 경력, 노조활동 경력, 사회운동 경력(학생운동 경력 제외)
3. 군복무기간
4. 노조활동, 사회운동, 학생운동으로 인한 수형기간
5. 노조활동으로 해직되고 조합에서 계속 활동한 경우 해직기간

제18조(호봉의 재산정) ① 채용 이후 경력을 합산 부여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호봉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경력을 합산한 뒤 전력 사실에 착오 또는 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초 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 발령한다.

③ 1항에 의해 호봉을 재산정함에 있어 승호 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감한다.

제19조(승호) 채용 성원에 대해서는 승호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승호를 한다.

1. 성원의 승호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승호는 매년 성원 개개인의 임용월이나 호봉 재산정에 따른 호봉부여일에 한다. 유급휴직 중인 성원도 정기 승호 대상에 포함된다(단, 무급휴직인 경우 그 기간을 승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4.9.16. 개정〉

제4장 퇴직금

제20조(퇴직금)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성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014.9.16. 개정〉 〈2019.5.16. 개정〉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은 임용일부터 기산하고 처무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 총 근속월수 × 1/12로 계산한다.

3. 퇴직금은 성원의 긴급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희망자에 한해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4. 누진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근속년수	비율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년 이상 ~ 10년 미만	1.1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
15년 이상 ~ 20년 미만	1.3
20년 이상 ~ 25년 미만	1.4
25년 이상 ~ 30년 미만	1.5
30년 이상 ~ 35년 미만	1.6

5. 퇴직금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의 기본급+상여금+제수당 포함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퇴직금누진률]

제5장 기타

제21조(적용) 이 규정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중앙사무처 성원에게도 함께 적용한다.

제2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개정) 보수규정은 일상적인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규정개정 직후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7.9.7. 개정> <2008.1.30. 개정> <2013.4.16. 개정>

[호봉표]

<2022. 12. 22. 개정>

호봉	기본급	호봉	기본급	호봉	기본급
1	2,000,000	16	2,800,000	31	3,650,000
2	2,050,000	17	2,850,000	32	3,700,000
3	2,100,000	18	2,900,000	33	3,750,000
4	2,150,000	19	2,950,000	34	3,800,000
5	2,200,000	20	3,000,000	35	3,850,000
6	2,250,000	21	3,100,000	36	3,950,000
7	2,300,000	22	3,150,000	37	4,000,000
8	2,350,000	23	3,200,000	38	4,050,000
9	2,400,000	24	3,250,000	39	4,100,000
10	2,450,000	25	3,300,000	40	4,150,000
11	2,550,000	26	3,350,000	41	4,200,000
12	2,600,000	27	3,400,000	42	4,250,000
13	2,650,000	28	3,450,000	43	4,300,000
14	2,700,000	29	3,500,000	44	4,350,000
15	2,750,000	30	3,550,000		

회계 규정

2001년	3월 22일	제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14일	제 2차 중앙위원회	1차 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2차 개정
2008년	7월 17일	제10차 임시대의원회	3차 개정
2011년	2월 17일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4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5차 개정
2015년	7월 23일	제23차 임시대의원회	6차 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7차 개정
2022년	2월 17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8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5차 정기대의원회	9차 개정
2023년	1월 26일	산별11대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10차 개정
2024년	1월 25일	산별 12대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8조](#)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해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013.4.16. 개정〉[〈2023.1.26. 개정〉](#)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해서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규약 제48조에 근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3.4.16. 개정〉[〈2023.1.26. 개정〉](#)

제4조(회계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일반회계1(조합비 회계)과 일반회계2(전임자 임금 회계)로 구분한다. 특히, 일반회계2는 파견 전임자, 상임 전문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금에 사용되며 계좌는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2011.2.17. 신설〉 〈2016.2.25. 개정〉

③ 특별회계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2013.4.16. 개정〉

제5조(회계 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연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2007.9.7. 신설>

1.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결산서 : 5년
2. 전표, 일계표, 월계표 : 3년
3. 회계프로그램의 전표파일은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해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집행위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4.16. 개정>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사후 대의원회 승인을 받는다. <2007.9.7. 개정>

② 위원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는 경정예산을 작성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007.9.7. 개정>
<2013.4.16. 개정>

제1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은 별표 1의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2007.9.7. 개정>

제11조(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해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사무처장은 매년 1월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처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을 대의원회에 제안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

제15조(조합비) 조합비는 규약 제17조에 따른다.

제16조(기금과 부과금)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24조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조합원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17조(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익 : 조합비와 1, 2호 이외의 수입 [〈2023.1.26. 개정〉](#)

제4장 회계처리

제18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항목간의 전용은 대의원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2013.4.16. 개정〉

제19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전출납취급) 총무실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9.7.22. 개정〉〈2023.1.26. 개정〉

제21조(회계위임전결) 회계처리 관련한 사무처장 위임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7.9.7. 신설〉

1. 기본결재를 득한 사업 예산집행
2. 중앙집행위원회 이상에서 예산편성 결의를 거친 특정사업 집행
3. 100만원 이내 비소모성 예산 지출(단, 200만원 이내는 수석부위원장 전결) <2015.7.23. 개정>
4. 50만원 이내 소모성 경비 지출(단, 100만원 이내는 수석부위원장 전결, 30만원 이내는 해당 실·국장 전결) <2015.7.23. 개정>
5. 급여·상여금, 활동비 지급
6. 정기적인 의무금·경상비 지출

제22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② 총무실 이외의 실은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총무실 이외의 실이 금전을 받은 경우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실로 인도해야 한다. <2019.7.22. 개정> <2023.1.26. 개정>

제23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해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해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1. 총계정 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

제25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해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해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27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8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급증을 작성해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29조(장부공개) 조합원이 열람의 목적을 명시한 요청서에 본부·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장부를 공개한다. <2008.7.17. 신설> <2022.2.23. 개정>

제6장 자산관리

제30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1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시설 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2022.2.17. 개정>

제3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3조(자산 및 비품 관리) ① 총무실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기입하고 수급을 명백히 해야 한다. <2019.7.22. 개정> <2023.1.26. 개정>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7장 회계감사

제34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규약 제35조 제5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23.1.26. 개정>

② 회계감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2007.9.7. 신설>

③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결과를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7.9.7. 신설> <2013.4.16. 개정> <2024.2.15. 개정>

④ 회계감사 업무 수행시 감사 1인당 1일(8시간 기준)마다 100,000원을 지급한다. <2024.2.15. 신설>

제35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 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 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외부전문가) 회계감사는 필요 시 외부 회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007.9.7. 신설)

제37조(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 수입부

과목			내역
관	항	목	
수입	조합비	조합비 1	조합비
		조합비 2	파견전임 임금을 위한 조합비
	미수금	미수의무금	
	잡수입	사업수익금	재정사업 수입
		기부금	
		이자수입	
		잡수입	
이월금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 지출부

1. 일반회계

과목			내역
관	항	목	
의무금	의무금	국제의무금	국제연대기구 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상급단체 의무금
운영비	유지비	소모품비	복사용지, 사무용품, 기타 소모품 구입 등
		통신비	전화, 통신, 우편, 핸드폰요금 지불 등
		임차관리비	사무실임대료, 관리비, 연료비, 사무실운영비 등
		신문도서비	일간지, 주간지, 잡지, 기타도서 구독료 등
		기구비품비	컴퓨터, 사무집기 구입 등
		기구비품수선비	각종 기구비품 유지보수비 등
		차량관리비	업무용차량 유지비(보험, 주유, 세금, 주차등)
		인쇄비	영수증, 지급증, 봉투, 각종 인쇄물
		포상비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등 각종 포상금 등
		비상조비	본부(지부·분회), 중앙사무처경조사비등
	인건비	급여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과목			내역
관	항	목	
	여비	퇴직급여충당금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판공비	직무활동비	
		업무추진비	업무 수행비 등
사업비	민실위사업비	민실위사업비	
	특별위원회사업비	특별위원회사업비	비정규특위등 사업비
	정책사업비	정책사업비	정책개발·집행을 위한 사업비
	조직쟁의사업비	조직사업비	조직강화활동비, 집회비용 등
		투쟁사업비	쟁의지원, 산별교섭지원, 외부연대사업 등
	교육선전사업비	교육사업비	각종교육, 책자발행 등
		선전사업비	노보발간, 방송·신문 감시활동 등
총무기획사업비	총무기획사업비	회의비, 행사지원 등	
기금적립금	기금적립금	기금적립금	투쟁기금 언론개혁기금 정치기금 신분보장기금 선거관리기금
교부금	협의회지원금	협의회지원금	직능,매체,지역별 협의회 지원
차입금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파견전임자	인건비	인건비	
	유지비	유지비	지역거주자 유지비 등

2. 특별회계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투쟁기금			
신분보장기금			
정치기금			
언론개혁기금			
선거관리기금			

상벌 규정

2001년	3월 22일	제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9월 7일	제 8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2차 개정
2016년	2월 25일	제24차 정기대의원회	3차 개정
2022년	2월 23일	제31차 정기대의원회	4차 개정
2023년	2월 9일	제36차 정기대의원회	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9장 제49조(포상), 제50조(징계)에 따라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3.4.16. 개정> <2023.2.9. 개정>

제2장 포상

제2조(포상) ①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련 인사에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한다. <2016.2.25. 개정>

② 본부·지부로 부터 포상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본부장·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표창장 및 상패(품)를 수여한다.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제3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본부·지부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본부·지부나 조합원
3. 조합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 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본부·지부나 조합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조직·모범조합원 표창 <2016.2.25. 개정>
2. 공로 표창
3. 감사 표창

제5조(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서 1부
2. 추천서 1부

제6조(시상) 시상은 제2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또는 조합 창립기념일에 표창한다. <2013.4.16. 개정>

제3장 징계

제7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항에 해당됐을 때 징계할 수 있다. <2023.2.9. 개정>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합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4. 고의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조합비 횡령 및 유용했을 때

제8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않는다.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5. 변상 : 고의 또는 업무과실로 인해 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금액을 변상한다. <2007.9.7. 신설>
6. 승인취소 : 본부·지부 설치 승인을 취소한다. <2007.9.7. 신설> <2022.2.23. 개정>

제9조(징계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기타 징계는 규약에서 정한 해당기관에서 결정한다.

제10조(징계절차) <2016.2.25. 개정> <2022.2.23. 개정> ① 조합원에 대한 초심 징계는 본부·지부 운영규정에 따르며, 재심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산하조직(본부·지부)에 대한 초심 징계는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고 재적위원 과반으로 의결하며, 재심 징계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조합원 또는 본부·지부는 10조에 의해 징계된 경우 이를 승복하지 않을 경우, 징계 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심 징계의 효력은 정지한다.

- ④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요구서\(서식 제2호\)](#)에 따라 해당기관에 상정해야 한다.
-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해야 한다.
- ⑥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재심 신청권(단 1회에 한한다)

제12조(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징계결의를 했을 때는 [징계결의서\(서식 제3호\)](#)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하며 징계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발생한다. 〈2016.2.25. 개정〉

제4장 심사위원회

제13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증인의 청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출석 요구 서식 제4호](#)).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징계결의 요구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징 계 사 유		
요 구 자 의 의 견		

위와 같이 징계결의를 요구합니다.

20NN 년 N월 N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재심 요구서

소 속	
성 명	
처분일자	
재심 요구 이유	

전국언론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심을 요구합니다

20NN 년 N월 N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징계 결의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의 결 주 문		
이 유		

상기와 같이 결의됐기에 상벌규정 제13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NN 년 N월 N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출석 요구서

성 명	
소 속	
직 위	
출석일시	
출석이유	
출석장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4조에 의해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20NN 년 N월 N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2004년	2월 11일	제 8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3년	4월 16일	제20차 임시대의원회	1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및 규약 제6조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1. 육체적 행위 : 형법상의 추행, 강간을 포함하여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등
4.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 기타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1.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2.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제3조(적용범위) 조합 남녀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조합 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 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중앙집행위원회의 사건 처리 종결까지 또는 당사자가 제소할 경우 대의원회 재심까지 유급휴가를 준다. 〈2013.4.16. 개정〉

③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

제5조(예방)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6조(처리절차, 징계)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피해자(대리인)는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가능한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인사위원장을 책임자로 대책기구를 구성한 뒤 활동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접수 후 한 달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④ 구체적인 징계절차 및 내용 등은 조합 상별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운영 규정

2004년	2월 11일	제8차 중앙위원회	제정
2023년	1월 26일	산별11대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사무처에 정보통신 운영자를 둔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2장 이용자

제5조(이용자의 권리) ① 언론노조 산하 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② 언론노조 산하 조직과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④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 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3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제7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운영자(조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중복 게시물 처리) ① 중복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 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이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9조(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① 명의 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 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0조(상업적 광고) ① 상업적 광고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말한다.
③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제11조(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제12조(성차별적 게시물 등) ① 성차별적인 게시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 보관 후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2023.1.26. 개정\)](#)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4.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②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3조(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일 안에 위원장에게 경위를 보고한다.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위원장에게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인사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알고자 할 때 인사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① 중앙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실(국)장, 지(본)부 소식은 지(본)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공지사항/지침', '언론노조 통신/소식', '자료실', '지(본)부 소식' 등)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절차

제16조(이의신청 방법) ① 운영자나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조합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위원장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18조(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집)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민주언론상 규정

2004년	2월 17일	정기대의원회	제정
2018년	1월 25일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1차 개정
2022년	10월 27일	산별 11대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2차 개정
2023년	2월 9일	36차 정기대의원회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민주언론상’이라 한다.(이하 본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권자) 본 상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수여한다.

제4조(심사대상 기간) 본 상의 후보 대상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제2장 시상 및 수상 자격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제6조(상의 종류) ① 본 상의 시상 부문은 ‘민주언론상’을 본상으로, 보도부문 특별상과 사진·영상부문 특별상, 활동부문 특별상, 성평등부문 특별상으로 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상을 추가할 수 있다. <2018.1.25. 개정> [<2022.10.27 개정>](#)

② 당해연도 수상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부상)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2023.2.9. 개정>](#)

제8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 수상자는 언론민주화와 언론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령을 구현하는데 뚜렷이 이바지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추천권자) 본 상 수상 후보자는 언론노조대의원, 언론유관단체장, 시민·사회단체장, 노동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단,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매달 뽑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추천된다. [\(2022.10.27 개정\)](#)

제10조(추천 방법)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에 제출한다.

②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소정 양식\) 1부](#)
2. [업적설명서\(소정 양식\) 1부](#)

제11조(추천접수 기간) 수상후보자 추천접수기간은 매년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

제4장 선정

제12조(선정위원회) ① 본 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위촉하는 선정위원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선정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018.1.25. 개정\)](#)

제13조(선정위원회의 운영)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고 필요한 절차는 언론노조 사무처에서 정한다.

민주언론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본인은 ‘민주언론상’ 규정 제8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 수상자는 언론민주화와 언론노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을 구현하는데 뚜렷이 이바지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 다 음 -

피추천자 (이름 / 소속)	
추천 이유가 되는 활동 제목	
추천 이유가 되는 활동 시기	
특기 사항	

민주언론상 수상후보자 업적 설명서